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 곤란 영세납세자에 대한 체납 징수특례 적용>

■ 김영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531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선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3. 11. 20.

다. 회 부 일 : 2023.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징수곤란 체납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무재산인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징수처의 강제징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징수처도 실익없는 강제징수로 행정적 낭비만 더하게 되므로 시정이 필요함.

이에,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0).

Ⅲ. 검토의견

1.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특례 적용 (김영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0) ○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1. 폐업일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 15억원 미만 2. 2023. 12. 31. 이전에 폐업하고 사업(근무) 계속 요건 충족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4.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5.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u>5천만원 이하</u> 6.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 ○ 특례내용 - 징수곤란 체납액(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 생계 곤란 소액 체납자 추가 ○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u>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3년이 경과한 자</u> 1. 폐업일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 15억원 미만 또는 <u>직전 3년 월평균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무재산</u>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u>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u> 6.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징수곤란채납액 1.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채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납액 2.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채납액 3.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채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납액	○ 징수곤란채납액 1.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채납액을 징수할 수 없고, <u>신청일 직전 3년 월평균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그 채납액</u>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

* 김영선의원안 2023. 11. 20. 발의(의안번호 25531)

□ 개정안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생계형 채납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의 채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것¹⁾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²⁾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 채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채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채납국세를 장기에

1)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채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채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채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채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제1항에서 “채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채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채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 동 제도는 같은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3)’(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 및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4)’ 제도(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를 개선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현행⁵⁾은 2022년까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25년까지 다시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을 최대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주요내용⁶⁾]

구 분	주 요 내 용
영세개인사업자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폐업 및 재기	2022.12.31. 이전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① 사업을 개시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또는 ②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舊,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 1. 1, 일부개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4) 舊,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5)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 특례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정됨.

6) 동 의안 비용추계서 미접부 사유서 참조

구 분	주 요 내 용
선의의 체납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처분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는 사람
소액 체납자	가산세만 면제되는 점,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로 한정
체납액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복적용 금지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 제외
특례 내용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체납액에 대한 최대 5년 이내 분납 허가
신청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례 취소	기준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체납액 징수특례 취소하고 강제징수

□ 개정안은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였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5년간 최저임금⁷⁾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⁸⁾.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최저생계비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8)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재산이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체납자의 소액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이 정리보류로 분류된 경우에도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면 과세역량을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하여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의 체납액 자체를 감면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종전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⁹⁾’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舊,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둘째, 현재에도 무재산 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만 있는 경우 압류가 제한되거나,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등¹⁰⁾ 제도적 장치가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¹¹⁾.

셋째,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생계곤란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참고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²⁾.

10)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여,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11) 기획재정부 의견임.

12) 舊,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35호)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개정안에서는 법 제99조의10제1항 각 호외 본문에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를 추가로 규정¹³⁾하고 있는데 이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분납허가 면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영세납세자의 소액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이라는 입법취지와 조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13)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u>아니한</u>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 ----- ----- ----- ----- ----- ----- ~~아니하고, 세무 채무 소멸~~ <u>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거주자에게</u> ----- -----.
1.~ 6. (생략)	1.~ 6. (생략)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u>납부지연가산세</u> (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u>분납 허가</u>	② (현행과 같음)

IV. 입법의 재정영향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경우, 소득세수 및 부가가치세수 등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개정안에 따른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개정안 기준에 부합하는 영세개인사업자 및 이들의 체납액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임.¹⁴⁾

문 의 처
02)6788-5161

1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고.